

수협 공동코드 분리 관련 CMS 업무처리 FAQ

(2025.9.1., 금융결제원 납부기획팀)

1. 공동코드 분리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출금이체 내역 중, 출금계좌가 수협중앙회 계좌인 경우 등록된 기관코드를 변경해야 하는지?

☞ 아닙니다. 공동코드 분리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출금이체 내역의 출금계좌가 수협중앙회 계좌에 해당하더라도, 기존 등록된 기관코드(007, 009) 그대로 출금이체를 요청(EB21, EC21) 하여야 합니다.

2. 공동코드 분리 시행일 이후 출금이체 등록 시(EB13), 출금계좌가 수협중앙회 계좌인 경우 반드시 수협중앙회 기관코드(030, 069, 070)를 세팅하여 보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는 수협중앙회 기관코드를 세팅하여 송신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수협은행 기관코드로 수협중앙회 계좌의 출금이체 등록을 요청하더라도 정상 처리할 예정입니다.

단, 이렇게 수협은행 기관코드로 수협중앙회 계좌에 출금이체가 등록된 경우, 추후 실제 출금이체를 요청(EB21, EC21) 할 때에도 수협은행 기관코드를 세팅하여 파일을 송신하여야 합니다. (수협중앙회 기관코드 세팅 시 오류)

3. 금융기관 또는 페이인포 채널을 통해 출금이체 신청(EB11) 접수 시, 수협중앙회 기관코드(030, 069, 070)로 유입되는 내역을 일괄적으로 수협은행 기관코드(007, 009)로 변환하여 저장해도 되는지?

☞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등록된 기관코드와 이용기관에 등록된 기관코드가 동일해야 하므로, EB11 파일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신한 내역을 그대로 저장·관리하여야 합니다. 이후 해당 출금이체 내역에 대해 출금요청 등을 처리할 때에는 등록 시 사용한 기관코드를 동일하게 세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EB11 파일을 통해 수협중앙회 기관코드(030, 069, 070)로 수신한 출금이체 내역은 추후 출금요청(EB21, EC21) 또는 해지요청(EB13) 시에도 반드시 동일한 수협중앙회 기관코드(030, 069, 070)로 송신하여야 합니다.